■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1. 6. 30.>

# 국민연금 [ ]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 신고서
# 건강보험 [ ]직장가입자 내용변경 신고서
# 고용보험 [ ]피보험자 내용변경 신고서
# 산재보험 [ ]근로자 내용변경 신고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3일 |
|---|---|---|

| | | |
|---|---|---|
| 사업장 | 사업장관리번호 | 명칭 |
|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 소재지<br>우편번호( ) | |
| 보험사무 대행기관 | 번호 | 명칭 |
| 하수급인 관리번호 | ※ 건설공사 등의 미승인 하수급인의 경우만 해당함 | |

| 일련 번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 변경 내용 | | | |
|---|---|---|---|---|---|---|
| | | | 연월일 (YYYY.MM.DD) | 부호 | 변경 전 | 변경 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변경 내용부호]: 1.성명 2.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국내거소신고번호) 3.특수직종근로자 해당 여부(국민연금만 해당) 4.자격취득일자(국민연금 · 건강보험만 해당) 5.자활근로종사자의 보장자격[생계급여 수급자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의2에 따른 급여의 특례에 해당하는 자, 차상위계층 또는 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로 변경되는 경우 또는 그 반대의 경우](고용보험만 해당) 6.휴직 종료일(고용 · 산재보험만 해당) 7.자격상실일자(국민연금 · 건강보험만 해당)

※ 건강보험 자격상실일을 변경할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장보험료 부과관리 업무처리지침」에 따른"직장가입자 보험료 정산 내역 착오자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
|---|---|
| 건강보험증 수령지 | [ ]사업장 주소지 [ ]해당 직장가입자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 |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유의사항

1. 근무내용이 변경될 경우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격관리 업무처리지침」에 따른"직장가입자(근무처·근무내용) 변동 신고서"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고, 고용·산재보험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피보험자 전근신고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건강보험증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하는 경우 발급됩니다. 신청절차는 가까운 지사방문, 고객센터(☎1577-1000), 홈페이지(www.nhis.or.kr), 모바일앱 M건강보험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작성방법

1. 가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국내거소신고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2. 변경 연월일 및 부호를 적습니다.
3. 변경 전 내용과 변경 후 내용을 적습니다.

## 처리 절차

| 신고서 작성 | → | 접수 및 확인 | → | 신고서 처리 | → | 자격 변경 확인 통지 | → | 수령 |
|---|---|---|---|---|---|---|---|---|
| 신고인 | | 국민연금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 · 근로복지공단 | | | | | | 신고인 |